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 보

제 627호 2024. 9. 20 (금)

## 입법예고

제2024-4162호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578
제2024-4168호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9582
제2024-4174호	김해시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39590
제2024-4207호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39593
제2024-4220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9597

## 고 시

제2024-300호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39612
------------	-----------------------------------	-------

##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 김 해 시 장

####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 임기에 대한 혼란을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일부 문구 수정(안 제3조)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 (<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회계과(계약1팀)

(전화: 055-330-3134, FAX: 055-722-1337, 이메일: [toltolle@korea.kr](mailto:toltolle@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회계과 담당자 김영훈(☎ 055-330-31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제 출 서

자치법규명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의 견	
처리결과 통보희망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 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자치법규명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현 행 조례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 임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일부 문구 수정(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4. 9월 중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4. 9월 중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4. 9월 중
- 입법예고 : 2024. 9. 20. ~ 2024. 10. 10.
- 비용추계서 :
- 조례·규칙 심의회 : 2024. 10월 중

##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을 “위촉위원의”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② <u>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u>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 제1 항과 같음)  ② <u>위촉위원의</u> ----- ----- ----- ----.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 김 해 시 장

####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 2. 개정이유

-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및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3. 주요내용

- 가.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 나. 법률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다. 주민에게 금전상 의무를 부과하는 보증금 예치 내용 삭제(현행 제9조 삭제)
- 라.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내용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 마. 불법 하도급 방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직접시공 원칙 반영(안 제11조)
- 바. 법률에 근거 없는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상 결격사유와 일치하도록 수정(안 제20조)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0. 10.까지 김해시장(참조 : 수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35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2  
(부원동) 김해시제2청사
- 2) 담당부서 : 수도과(급수관리1팀)  
(전화:055-330-3883, FAX:055-722-0360)

##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공고명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 법률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주민에게 금전상 의무를 부과하는 보증금 예치 내용 삭제(현행 제9조 삭제)
-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는 내용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 불법 하도급 방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직접시공 원칙 반영(안 제11조)
- 법률에 근거 없는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상 결격사유와 일치하도록 수정(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4. 9.(예정)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2024. 9.(예정)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4. 9.(예정)
- 입법예고 : 2024. . . ~ 2024. . . (20일 이상)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 .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업원”을 “시공 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급수지역의 범위
2. 급수신청 건수
3. 누수발생 건수
4. 급수사용자의 편의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시공 기술자를”을 “해당 업체의 인력을”로 한다.

제2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1. 필수 보유 장비 및 시설 기준

구 분	기	준
장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기(50m/m이상) : 1대</li> <li>· 새들천공기(13~50mm) : 1대</li> <li>· 포장절단기(T=14인치이상) : 1대</li> <li>· 작업차량(1톤이상) : 1대</li> <li>· 융착기 : 1대</li> <li>· 산소절단기 : 1대</li> <li>· 다짐기(50kg) : 1대</li> <li>· 용접기 : 1대</li> </ul>	
영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10㎡ 이상</li> <li>· 창고 및 야적장 23㎡ 이상</li> <li>· 전화기 : 1대</li> </ul>	

### 2. 대행업 지정 심사 기준표

(업체명: )

항목	기	준	배점	점수	증빙자료											
<b>총 계</b>																
1. 시공능력 (30)	<b>합계</b>	30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4억원 미만</td> <td style="padding: 2px;">24</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 font-size: small;">공사 실적증명서</td> </tr> <tr> <td style="padding: 2px;">4억원 이상~6억원 미만</td> <td style="padding: 2px;">26</td> </tr> <tr> <td style="padding: 2px;">6억원 이상~10억원 미만</td> <td style="padding: 2px;">28</td> </tr> <tr> <td style="padding: 2px;">10억원 이상</td> <td style="padding: 2px;">30</td> </tr> </table>	4억원 미만	24	공사 실적증명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26	6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8	10억원 이상	30					
4억원 미만	24	공사 실적증명서														
4억원 이상~6억원 미만	26															
6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8															
10억원 이상	30															
2. 기술능력 (25)	<b>합계</b>	25														
	<b>소계</b>	10														
	기술자격 종업원 (공고일 이전 채용 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기술자 보유(0명) (1인당 3점)</td> <td style="padding: 2px;">6</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 font-size: small;">·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td> </tr> <tr> <td style="padding: 2px;">상수도 관광시설운영관리사 1.2급 소지자</td> <td style="padding: 2px;">2</td> </tr> <tr> <td style="padding: 2px;">배관관련 자격 소지자</td> <td style="padding: 2px;">2</td> </tr> </table>	기술자 보유(0명) (1인당 3점)	6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상수도 관광시설운영관리사 1.2급 소지자	2	배관관련 자격 소지자	2							
기술자 보유(0명) (1인당 3점)	6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국가 기술 자격증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상수도 관광시설운영관리사 1.2급 소지자	2															
배관관련 자격 소지자	2															
	<b>소계</b>	15														
	건설기술자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5년 미만</td> <td style="padding: 2px;">7</td>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 font-size: small;">건설 기술 경력증명서</td> </tr> <tr> <td style="padding: 2px;">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padding: 2px;">9</td> </tr> <tr> <td style="padding: 2px;">10년 이상 ~ 15년 미만</td> <td style="padding: 2px;">11</td> </tr> <tr> <td style="padding: 2px;">15년 이상 ~ 20년 미만</td> <td style="padding: 2px;">13</td> </tr> <tr> <td style="padding: 2px;">20년 이상</td> <td style="padding: 2px;">15</td> </tr> </table>	5년 미만	7	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5년 이상 ~ 10년 미만	9	10년 이상 ~ 15년 미만	11	15년 이상 ~ 20년 미만	13	20년 이상	15			
5년 미만	7	건설 기술 경력증명서														
5년 이상 ~ 10년 미만	9															
10년 이상 ~ 15년 미만	11															
15년 이상 ~ 20년 미만	13															
20년 이상	15															

3. 경영상태 (24)	합계		24		
	소계		12		
	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75%이상	8		
		50%이상~75%미만	9		
		25%이상~50%미만	10		
		10%이상~25%미만	11		
		10%미만	12		
	소계		12		
	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250%미만	8		
		250%이상 ~ 500%미만	9		
		500%이상 ~ 750% 미만	10		
		750%이상 ~ 1,000%미만	11		
		1,000% 이상	12		
4. 시설 및 공구(21)	합계		21		
	“별표1”의 장비 보유	장비보유	17		
		“별표1” 작업차량이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	-1점 감점		
		회사 장비 소유시 가점 적용 (작업 차량, 백호 한정)	대당+2점 가산(최고+4)		
5. 대행업체 성실도(전자 대행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li> <li>· 야간 공휴일에 출동하지 않을 시(연락불가)</li> <li>· 타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시</li> </ul>	각 회당 -1점 감점  각 회당 -1점 감점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설 및 공구 순으로 각 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며, 이 기준으로도 동점일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정기준)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종업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② 제1항의 대행업자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4조(지정기준) ① ----- 시 공 기술자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p> <p>1. 급수지역의 범위 2. 급수신청 건수 3. 누수발생 건수 4. 급수사용자의 편의</p> <p>&lt;삭 제&gt;</p>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p> <p>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년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lt;삭 제&gt;</p>
<p>제9조(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서 500만원을 현금 및 은행 자기앞 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 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보증 보험으로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 배상금)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로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제9조의 보증금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고, 공사 신청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11조(공사 착공요령) ① ~ ③ (생 략)

④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20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 6. (생 략)

<삭 제>

제11조(공사 착공요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해당 업체의 인력을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정취소) -----  
-----  
-----.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3.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때

4. ~ 6. (현행과 같음)

## 김해시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 김 해 시 장

####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2. 제정이유

- 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024.03.05.)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 나. 출자 ·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의무적 수행 필요

#### 3. 주요내용

- 가.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안 제2조)
- 나.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 · 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 다. 출자 · 출연기관장의 사이버보안 업무 의무적 수행(안 제4조)
- 라. 김해시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 · 감독(안 제5조)
- 마.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업무(안 제6조)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 10. 10. 까지 아래사항을 기록한 의견제출서를 김해시장(참조 :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보내실 곳 : 김해시 정보통신과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정보통신과
- 전 화 : 055-330-2657 (FAX : 055-722-0500)
- E-mail : karismalee@korea.kr

## **김해시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 ·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 · 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기관 중 김해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이버공격 ·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 감독)** 시장은 기관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김해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 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의 견	
처리결과 통보희망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자치법규명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김 해 시 장

###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2021. 7. 27. 시행 2022. 4.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정의(안 제2조)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10조)
-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업종 제한(안 제11조)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민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 전 화 : 055-330-3413 (FAX: 055-722-1780)
- E-mail : ilaw98@korea.kr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년 9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포 2021. 7. 27. 시행 2022. 4. 28.)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정의(안 제2조)
- 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4조)
- 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10조)
- 마. 지역상생구역에 대한 업종 제한(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부서협의 : 2024. 9.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원안 동의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규제영향 분석서 붙임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24. 9. 20. ~ 10. 10.(20일 이상)
- 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붙임
- 바. 규제개혁위원회 : 2024. 11.
- 바. 조례·규칙 심의회 : 2025. 1.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구역이 포함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 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영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

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물품 등은 김해시의 소유로 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
- 나. 남부방법 구체화 및 분할남부 규정 마련
- 다. 권익위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따른 체납자 단수예고방식 개선
- 라. 기타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상 미비점 보완

3.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 있는 가구 수도요금 감면 근거 신설
- 나. 수급자, 다자녀,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중복 적용 금지 및 수도요금 감면 근거 신설
- 다. 권한 일부 위임 근거 신설
- 라. 단수예고장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및 통지방식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 10. 10.까지 김해시장(참조 : 수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라.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35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2  
(부원동) 김해시제2청사
- 2) 담당부서 : 수도과(급수관리1팀)  
(전화:055-330-2813, FAX:055-333-3525)

##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공고명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 방법을 구체화 하며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 권익위 의결에 따라 수도체납자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수도요금 감면 근거 신설(안 제21조)
- 수급자, 다자녀,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중복 적용 금지 및 수도요금 감면 근거 신설(안 제40조)
- 권한 일부 위임 근거 신설(안 제53조)
- 단수예고장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예방 규정 신설(안 제43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4.9. ~ 2024.10. (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 의견 :
- 비용추계서 :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0

## 김해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으로, “수급자 또는 다자녀 요금감면”을 “요금감면을”로 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특수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부과시”를 “특수학교:”로, “적용한다”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자”를 “지하 누수 등 사용자”로, “지하의 누수 등”을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 기간은 해당 연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또는”을 “필요하거나”로, “특별히 감면 사유”를 “특별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수도요금의 100분  
의 50 감면

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 발령 시: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수도요  
금의 100분의 30 감면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있는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세대

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 대상이 중복 될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항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 감면률,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다자녀”를 “제40조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되던 감면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감면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 또는 다자녀 요금감면</u> 적용받으려는 때</p> <p>7. (생 략)</p> <p>② (생 략)</p> <p>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부과시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중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p> <p>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p>제21조(신고) 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 <u>요금감면을</u> ----- -----</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도사용자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u>특수 학교:</u> ----- ----- ----- <u>적용</u></p> <p>2. ----- -- <u>경우</u></p>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도 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감경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 수도 요금의 50퍼센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 수도요금의 30퍼센트

<신 설>

<신 설>

3. 지하 누수 등 사용자-----  
----- 경우로서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 기간은 해당 연도 6개월 이내로 한다.

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 발령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있는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

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  
수료 감면의 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신 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출  
장소·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다자녀 상  
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 등

6. ----- 필  
요하거나 ----- 특별한 사유-----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은 중복으  
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신청자가 선택한 항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 감  
면률,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  
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  
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  
-----  
-----.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  
-----  
-----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그간 물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감면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권익위 의결에 따라 단수예고장 통지방식을 신설하여 체납자의 권리율 보호하고 단수예고장 효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누수감면신청 서류 추가(안 제23조제3항)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감면기준, 신청 방법 등 정비(안 제23조제5항 및 제7항)
- 단수예고 중복규정 삭제(안 제26조제3항)
- 단수예고장 통지방식 신설(안 제26조의2)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4.9. ~ 2024.10. (20일 이상)
  - 입법예고 시 의견 :
- 비용추계서 :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10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 제6항”을 “제5항”으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 ①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른 누수분의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u>누수공사 사전(전, 중, 후)</u>을 첨부하여 <u>별지 제10호서식</u>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례 별표 3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세대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27조의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p> <p>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p> <p>⑦ 제5항, 제6항 및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u>별지 제11호서식</u>, <u>별지 제17호서식</u> 및 <u>별지 제18호서식</u>에 따라서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3조(상수도요금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지 제10호서식</u>-----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조례 제40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세대</u>----- ----- -----. -----.</p> <p>&lt;삭 제&gt;</p> <p>⑦ 제5항 ----- ----- <u>별지 제11호서식</u> ----- -----.</p>
<p>제26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p> <p>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독촉장에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26조의2(정수예고 및 정수처분)</p> <p>①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별지 제5호서식]

##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서(제11조제1항 관련)

신청인 성명 (상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급수전 소재지			
수용가 관리번호	8080-		
급수수용시설물 소유자	성명 : (남/여)	사용자 또는 관리자	성명 : (남/여)
현행 급수용도	가정용( ) 일반용( ) 산업용( )	변경 후 급수용도	가정용( ) 일반용( ) 산업용( )
변경 사유			
첨부서류 (산업용 변경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분)		

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신고합니다.

※ 유의사항 :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  
을 적용(신청일 기준 해당 수용가의 겸침기간의 급수 일수가 많은 업종 적용)

- 15일 미만 사용 시: 변경 전 업종 적용
- 15일 이상 사용 시: 변경 후 업종 적용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옥내누수 감면신청서(제23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명 (상호)	(남/여)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급수전 소재지			
수용가 관리번호	8080-		
누수수리 일자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 첨부서류 1. 옥내누수수리확인서 (별지제19호서식) 2. 누수수리공사사진 (전,중,후)			

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서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제23조 관련)

신청구분	신규( ) 변경( ) 해지( )								
수도 사용자 (수용가)	수용가성명	(남/여)							
	관리번호								
	소재지								
감 면 대 상 자	감면대상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만 19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세대주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급자 등 요금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② 고유식별정보 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본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신청서 처리가 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위 신청인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이사, 자격상실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김해시장 귀하

###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

위 신청인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중증장애인 세대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 · 면 · 동장 (직인)

[별지 제19호서식]

## 옥내누수 수리확인서(제23조제3항 관련)

수용가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수용가 주소			
누수수리 일자			
누수수리 내용			
※ 누수수리부위 정확하게 기재요망.			

위와 같이 옥내누수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수리한 사람(업체) 성명(상호) : (서명 또는 인)

주소(소재지)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 사항을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폐기물재활용시설(펠릿제조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 결정(m <sup>2</sup> )	시행 규모(m <sup>2</sup> )		비고 (최초결정일)
		기정	금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2,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지면적 : 30,650 m<sup>2</sup></li><li>· 건축면적 : 6038.79 m<sup>2</sup></li><li>· 연 면 적 : 6,038.79 m<sup>2</sup></li><li>· 용적률산정 연면적       : 6,038.79 m<sup>2</sup></li><li>· 높       이 : 지상 1층</li><li>· 건 폐 율 : 19.70%</li><li>· 용 적 률 : 19.70%</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지면적 : 32,096 m<sup>2</sup></li><li>· 건축면적 : 6,251.75 m<sup>2</sup></li><li>· 연 면 적 : 6,240.95 m<sup>2</sup></li><li>· 용적률산정 연면적       : 6,240.95 m<sup>2</sup></li><li>· 높       이 : 지상 1층</li><li>· 건 폐 율 : 19.48%</li><li>· 용 적 률 : 19.44%</li></ul>	김해시고시 제2009-130호 (2009.11.2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아주녹화개발(주)
- 주 소 : 김해시 상동면 여차로 660

5. 사업기간 : 2019. 05. 31. ~ 2025. 05. 30 (당초) → 2019. 05. 31. ~ 2026. 05. 30.(변경)

- 변경사유 :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당초	상동면 여차리	99-41	답	-	-	-	-		-
1	변경	상동면 여차리	99-41	답	168	168	김**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60-***		7분의3
							유**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60-***		7분의2
							유**	부산시 북구 구포동 1060-***		신규 추가 7분의2
2	당초	상동면 여차리	99-91	도로	-	-	-	-		-
2	변경	상동면 여차리	99-91	도로	1,189	1,189	국 (국토교통 부)	-		신규 추가
3	당초	상동면 여차리	107-6	도로	-	-	-	-		-
3	변경	상동면 여차리	107-6	도로	69	69	국 (국토교통 부)	-		신규 추가
4	당초	상동면 여차리	108-5	전	1,610	1,610	백**	김해시 상동면 동복로 ****		
4	변경	상동면 여차리	108-5	전	1,610	1,610	백**	김해시 상동면 동복로 ****		
5	당초	상동면 여차리	108-7	도로	-	-	-	-		-
5	변경	상동면 여차리	108-7	도로	4	4	국 (국토교통 부)	-		신규 추가
6	당초	상동면 여차리	108-8	도로	-	-	-	-		-
6	변경	상동면 여차리	108-8	도로	25	25	국 (국토교통 부)			신규 추가
7	당초	상동면 여차리	112	임야	393	239	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7	변경	상동면 여차리	112	임야	393	239	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8	당초	상동면 여차리	118	임야	1,620	414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8	변경	상동면 여차리	118	임야	1,620	414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9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0	임야	63	63	백**	김해시 상동면 동복로 ****		
9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0	임야	63	63	백**	김해시 상동면 동복로 ****		
10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1	전	185	185	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0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1	전	185	185	김**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1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2	임야	86	86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1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2	임야	86	86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2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3	답	347	347	백**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		
12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3	답	347	347	백**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		
13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4	임야	631	631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3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4	임야	631	631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4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5	임야	284	284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4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5	임야	284	284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5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63-5	도로	272	258	국 (국토교통 부)			
15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63-5	도로	272	258	국 (국토교통 부)			
16	당초	상동면 여차리	1263-11	도로	-	-	-	-		-
16	변경	상동면 여차리	1263-11	도로	73	73	국 (국토교통 부)	-		신규 추가
17	당초	상동면 여차리	산7	임야	1,190	702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7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7	임야	1,109	702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8	당초	상동면 여차리	산8	임야	3,868	1,309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8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8	임야	3,868	1,309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19	당초	상동면 여차리	산10	임야	1,190	1,190	최**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507번가길 **, ***호		
19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10	임야	1,190	1,190	최**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507번가길 **, ***호		
20	당초	상동면 여차리	산11-1	임야	224,541	1,841	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20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11-1	임야	216,041	46	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분할
20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11-25	임야	8,500	1,713	김**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분할
21	당초	상동면 여차리	산11-6	임야	15,206	8,169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21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11-6	임야	15,209	8,169	아***** (주)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22	당초	상동면 여차리	산11-11	임야	3,306	170	백**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		
22	변경	상동면 여차리	산11-11	임야	3,306	170	백**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		
	당초	합 계			254,792	17,498				
	변경	합 계			256,242	18,944				

7.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유

: 숟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 사업장 폐목재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생이용을 통해 고유가 대처 및 이산화탄소 감축 등에 기여하고자 결정한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약적장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일부 확장하고자 함.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비치】